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무선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검증된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무선국 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업자가 스스로 시험·확인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무선국자기적합확인)하도록 「전파법」이 개정(법률 제21553호, 2026.4.21. 공포, 2026.10.22. 시행)됨에 따라 무선국자기적합확인의 절차 및 방법, 사후관리를 위한 수시검사 실시 근거, 무선국자기적합확인 수수료 신설, 거짓 등의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한편, 해외에서 사용되어 국내에서 전파 혼신을 유발하지 않는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해서는 제조에 필요한 인가를 면제하고, 전파차단장치 도입·폐기 신고 의무기관을 중앙행정기관(그 감독을 받는 기관을 포함)에서 장치 사용이 가능한 모든 기관으로 확대하며, 국내에 도입된 전파차단장치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후 관리할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이 교육·훈련·장비정비 등의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파법」이 개정(법률 제21553호, 2026.4.21. 공포, 2026.10.2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무선국자기적합확인 서류 제출 및 검토 절차 (제42조의3 신설)

시설자는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 준수 등 확인하여 자기적합확인서 제출, 이를 검토하여 확인증명서 발급하도록 함

나. 무선국자기적합확인에 따른 수시검사 근거 (제45조제5항제2호, 제7항·제8항)

사후관리를 위해 자기적합확인 무선국에 대한 수시검사 실시, 불합격률이 일정기준(15%)을 초과하는 경우 전수검사 실시하도록 함

다. 무선국자기적합확인 수수료 신설 (별표 13)

자기적합확인서 제출 사전 안내, 접수 및 검토(부적합 서류 보완 절차 포함), 확인증명서 발급 등 새로운 행정절차 신설을 고려하여 2만9천원 산정함

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25 및 별표28)

무선국 시설자의 자율성에 따른 사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기존 준공

검사 위반에 따른 과태료 대비 처벌기준 상향함

마. 교육·훈련 등의 장소 지정 및 신고 절차 마련(안 제53조 신설)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차단장치 교육·훈련 등을 위한 장소를 지정·고시하는 경우 주변 전파이용 현황, 전파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전파환경 등의 변화로 장소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사실을 해당 장소의 운영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함.
- 2) 교육·훈련 등의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려는 기관의 장은 전파차단장치 교육·훈련 등의 신고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바. 교육·훈련 등의 신고 심사 절차 마련(안 제53조의2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받은 교육·훈련 등의 계획에 대해 주파수 적정성 및 목적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사. 교육·훈련 등의 감독 체계 마련(안 제53조의3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차단장치의 교육·훈련 등 감독을 위해 전파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고, 전파감독관이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사실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아. 전파차단장치 도입·폐기 신고 주체 변경(안 제53조의4 개정)

전파차단장치 도입·폐기 신고 의무 대상이 중앙행정기관에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전 기관으로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도 이를 반영함.

자. 수출용 전파차단장치 제조인가 면제 절차 마련(안 제53조의6 신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조에 대하여는 「방위사업법」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 허가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인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차. 전파차단장치 사용이력 기록 사항 규정(안 제53조의7 신설)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력에는 사용 목적, 사용 일시 및 장소, 사용한 자, 전파차단장치의 인가번호·명칭·일련번호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카. 전파차단장치 사용이력 및 관리실태 점검 절차 마련(안 제53조의8 신설)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력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요청하되 30일의 제출기한을 두도록 함.
- 2) 관리실태 점검 시에는 점검하려는 기관의 장에게 30일 전에 점검계획을 통보하고, 점검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타. 권한의 위임 사항 정비(안 제123조 개정)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에 교육·훈련 등을 위한 장소의 지정·고시, 교육·훈련 등의 신고·신고수리 및 감독, 사용이력 제출요구 및 관리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의 제출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통신용 무선국을 말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시설자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기준이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갈음(이하 “무선국자기적합확인”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른 무선국 준공신고 시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기재사항이 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및 법 제71조에 따른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한 자에게 확인증명서 (이하 “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그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선국자기적합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 중 “법 제24조제2항”을 “법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제43조의2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4항”을 “법 제2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24조제4항”으로, “한다)를”을 “한다) 또는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법 제24조제5항”을 “법 제24조제6항”으로, “제45조제7항”을 “제45조제9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4조제4항”을 “법 제2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법 제24조제4항·제5항”을 “법 제24조제5항·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법 제24조제1항·제4항·제5항”을 “법 제24조제1항

· 제5항·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중전의 제10항) 중 “법 제24조제1항· 제4항· 제5항”을 “법 제24조제1항· 제2항· 제5항· 제6항”으로, “검사”를 “검사(무선국자기적합확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2. 제42조의3제4항에 따라 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⑦ 제5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은 직전 수시검사 결과에 따른 불합격률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시검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제5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의 결과 그 불합격률이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무선국에 대하여도 수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3조의3 및 제53조의4를 각각 제53조의9 및 제53조의10으로 하고, 제53조를 제53조의4로 한다.

제53조의2를 제53조의5로 하고,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교육·훈련등의 장소 및 신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등을 위한 장소를 지정·고시하려는 경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주변 전파이용 현황

2. 전파 도달범위 및 전파영향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1항에 따른 장소에 대해 전파환경 등의 변화로 전파 혼신·간섭 가능성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취소 사실은 해당 장소의 운영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등의 목적으로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기관의 장은 교육·훈련등의 신고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3조의2(교육·훈련등의 심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계획에 대해 주파수적정성 및 목적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의3(교육·훈련등의 감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전파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파감독관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사실을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의4(종전의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종전의 제53조) 제2항 중 “법 제29조제4항”을 각각 “법 제29조제7항”으로 하고, 같

은 항 중 “중앙행정기관”을 “기관”으로 한다.

제53조의5(중전의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5항”을 “법 제29조제8항”으로 한다.

제53조의6부터 제53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6(수출용 전파차단장치의 인가 면제) 법 제29조제8항 단서에 따라 전파차단장치 제조 인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인가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수출을 허가받은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
2.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 따라 수출을 허가받은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

제53조의7(전파차단장치 사용이력의 기록) 법 제29조제6항제2호 및 법 제29조제9항에 따른 이력에는 사용 목적, 사용 일시 및 장소, 사용한 자, 전파차단장치의 인가번호, 명칭 및 일련번호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3조의8(사용이력 및 관리실태의 점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10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력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요청하되, 30일의 제출기한을 두어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10항에 따라 관리실태를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검하고자 하는 기관의장에게 30일 전에 점

검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점검받은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의9(중전의 제53조의3) 중 “제4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제7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날”을 “날 또는 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를 받은 날”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준공검사증명서를”을 “준공검사증명서 또는 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기검사”로,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검사”로 한다.

제67조제2호 중 “법 제24조제4항”을 “법 제24조제5항”으로 한다.

제77조제3항 중 “제5항제2호·제3호를”을 “제5항제3호·제4호를”로,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을”을 “제9항, 제11항 및 제12항을”로 한다.

제96조제1항 본문 중 “법 제24조제1항·제4항·제5항·제7항”을 “법 제24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제7항”으로, “준공검사·정기검사를”을 “준공검사(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정기검사”로 한다.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24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법 제24조제1항·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123조제2항제4호 중 “제4항제2호”를 “제5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

7호의4 및 제7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4. 법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 교육·훈련등을 위한 장소의 지정·고시, 교육·훈련등의 신고·신고수리 및 교육·훈련등의 감독에 관한 사항

7의5. 법 제29조제10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력 제출요구 및 관리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제123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자기적합확인에 관한 사항

별표 13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무선국 중 표본검사를 받지 않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제96조 및 제97조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무선국별로 2만원의 준공검사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표본검사를 받지 않은 무선국이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를 적용하여 산정된 검사수수료에서 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한 무선국에 대해서는 해당 무선국별로 2만9천원의 무선국자기적합확인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별표 25 제3호 위반행위란 제3호 중 “법 제24조제2항”을 “법 제2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8호(종전의 제7호) 위반행위란 제8호 중 “법 제

24조제3항”을 “법 제24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란 중 “제4호의3”을 “제4호의4”로 하고, 같은 표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4호의3	허가 취소 또는 폐지							
--	----------------	-------------	--	--	--	--	--	--	--

별표 25 제9호(종전의 제8호) 위반행위란 제9호 중 “법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을 “법 제24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별표 28 제2호가목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90조 제2호의2	200	250	300					
---	--------------	-----	-----	-----	--	--	--	--	--

별표 28 제2호가목6)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2조의3(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의 제출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통신용 무선국을 말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은 제외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시설자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기준이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음(이하 “무선국자기적합확인”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른 무선국 준공신고 시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의 기</u>		

제43조(준공기한의 연장) <u>법 제24조제2항</u>에 따라 준공기한을 연장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준공기한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u>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u> ④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기재사항이 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및 법 제71조에 따른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한 자에게 확인증명서(이하 “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u> ⑤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그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다.</u> ⑥ <u>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선국자기적합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제43조(준공기한의 연장) <u>법 제24조제3항</u>----- ----- ----- -----.
---	---

제43조의2(재검사의 기한) 법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준공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한을 말한다.

제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① 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 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명서(이하 “준공검사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날(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무선국의 경우에는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2. (생략)

3.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중에

제43조의2(재검사의 기한) 법 제24조제4항 -----

-----.

제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① 법 제24조제5항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1. -----
--- 법 제24조제4항-----

----- 한다) 또는 제42조의3 제4항에 따른 무선국자기적합 확인증명서를 -----

--

2. (현행과 같음)

3. -----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검사
(이하 “수시검사”라 한다)를
받은 무선국: 수시검사를 받고
제45조제7항에 따른 검사증명
서(이하 이 조에서 “검사증명
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날.
이 경우 종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수시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의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4. 5. (생략)

제45조(검사의 시기·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
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르며, 이 시기에 정기검사
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정기검사
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
른 재난이 발생하여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
에 정기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정기검사 시기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기검사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법 제24조제6항-----

제45조제9항-----

4. 5. (현행과 같음)

제45조(검사의 시기·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5항-----

1. ~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의 비율은 100분의 30에서 표본추출비율을 공제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본검사의 불합격률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생략)

<신설>

2. · 3. (생략)

⑥ (생략)

<신설>

<신설>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1. (현행과 같음)

2. 제42조의3제4항에 따라 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3. · 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제5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은 직전 수시검사 결과에 따른 불합격률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시검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제5항제

⑦ 법 제24조제4항·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한다.

⑧ (생략)

⑨ 법 제24조제1항·제4항·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무선국검사관임을 증명하는 증표나 공무원증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⑩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법 제24조제1항·제4항·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호에 따른 수시검사의 결과 그 불합격률이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무선국에 대하여도 수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법 제24조제5항·제6항 ----
-----.

⑩ (현행 제8항과 같음)

⑪ 법 제24조제1항·제5항·제6항 ----

-----.

⑫ ----- 법 제24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 ---- 검사(무선국자기적 합확인을 포함한다)-----
-----.

제53조(교육·훈련등의 장소 및 신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등을 위한 장소를 지정·고시하려는 경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신 설>

수 있다.

1. 주변 전파이용 현황

2. 전파 도달범위 및 전파영향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1항에 따른 장소에 대해 전파환경 등의 변화로 전파 혼신·간섭 가능성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취소 사실은 해당 장소의 운영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등의 목적으로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기관의 장은 교육·훈련등의 신고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3조의2(교육·훈련등의 심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계획에 대해

<신 설>

제53조(전파차단장치의 도입·폐기신고) ① 법 제29조제4항 중 “그 제원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략)

②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도입신고 또는 폐기신고(이하 “도입·폐기신고”라 한다)를 해야 하는 중앙행정기

주파수적정성 및 목적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의3(교육·훈련등의 감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전파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파감독관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사실을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의4(전파차단장치의 도입·폐기신고) ① 법 제29조제7항

-----.

1. ~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9조제7항-----

----- 기관-----

관의 장은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날 또는 폐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53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제조·수입·판매인가)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의 인가(이하 “제조·수입·판매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조·수입·판매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4. (생략)
- ② ~ ④ (생략)

<신 설>

-----.

제53조의5(전파차단장치의 제조·수입·판매인가) ① 법 제29조제8항-----

-----.

1. ~ 4.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3조의6(수출용 전파차단장치의 인가 면제) 법 제29조제8항 단서에 따라 전파차단장치 제조인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인가 면제를

<신 설>

<신 설>

신청하여야 한다.

1.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수출을 허가받은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

2.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 따라 수출을 허가받은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

제53조의7(전파차단장치 사용이력의 기록) 법 제29조제6항제2호 및 법 제29조제9항에 따른 이력에는 사용 목적, 사용 일시 및 장소, 사용한 자, 전파차단장치의 인가번호, 명칭 및 일련번호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3조의8(사용이력 및 관리실태의 점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10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력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요청하되, 30일의 제출기한을 두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10항에 따라 관리실태를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검하고자 하는 기관의장에게

등급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제1호만 적용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
검사[제31조제4항제3호·제6
호·제7호 및 제9호와 제39조
의2제3항제1호(안테나공급전
력 및 안테나의 형식·구성
및 이득에 관한 사항만 해당
한다. 다만, 그 변경으로 전자
파 강도가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제2호 및 제4호의
변경사항만 해당한다]를 받아
야 하는 무선국: 준공검사증명
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다만,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
전력의 합(동일한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송신장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안테나에
부착된 송신장치의 안테나공
급전력의 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500와트를 초과
하는 무선국은 준공검사증명
서를 받은 날 보고하여야 한
다.

_____.

1. -----

----- 날 또는 무선국자기
적합확인증명서를 받은 날--
--.

----- 준공검사증명
서 또는 무선국자기적합확인
증명서 -----
--.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검사
에 합격하여 검사증명서를 받
급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② ~ ⑤ (생략)

제67조(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 측정 요청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 등급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제1호만 적용한다.

1. (생략)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제45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
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

제77조(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

① · ② (생략)

③ 전파응용설비 검사의 유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제44조

2.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기
검사-----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검사-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7조(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4조제5항-----

제77조(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제2항을, 검사의 시기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5항제2호·제3호를,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을, 정기검사의 연기에 관하여는 제46조를 각각 준용한다.

④ (생략)

제96조(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① 법 제24조제1항·제4항·제5항·제7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준공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는 자는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해당 설비가 둘 이상의 무선국에 공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하나의 무선국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되, 각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다를 때에는 안테나공급전력이 높은 무선국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③ (생략)

제97조(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① 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에

----- 제5항제3호·제4호를-----

----- 제9항, 제11항 및 제12항을-----

-----.

④ (현행과 같음)

제96조(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① 법 제24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제7항 -----

--- 준공검사(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정기검사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7조(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① -----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 ·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 ·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 2. (생략)

② 안테나공급전력 500와트 미만의 다중무선설비(「방송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하는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또는 500메가헤르츠(MHz)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텔레비전(텔레비전방송국의 텔레비전은 제외한다)의 송신기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경우의 검사수수료는 별표 13의 그 밖의 무선국란의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가 50와트 이상 500와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안테나공급전력 500와트 미만의 다중무선설비를 사용하는 무선국 중 제24조 제2항 제1호가목·나목 및 마목(무선호출은 제외한다)

----- 법 제24조제1항 · 제5항
및 제6항-----

1. · 2. (현행과 같음)

[illegible]

에 해당하는 무선국은 별표 13
의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란에 해당하는 검사수수
료를 적용한다.

③ (생 략)

제1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 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
에게 위임한다.

1. ~ 3. (생 략)

4. 법 제24조에 따른 무선국의
검사(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무선국의 검사는 제외한
다)에 관한 사항

5. ~ 7의3. (생 략)

<신 설>

<신 설>

-----.

③ (현행과 같음)

제1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
----- 제5항제2호 -----

5. ~ 7의3. (현행과 같음)

7의4. 법 제29조제4항부터 제6
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 교
육·훈련등을 위한 장소의 지
정·고시, 교육·훈련등의 신고
·신고수리 및 교육·훈련등의
감독에 관한 사항

7의5. 법 제29조제10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력 제출
요구 및 관리실태 점검에 관

8. ~ 28. (생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
다.

1. ~ 3. (생략)

<신설>

4. ~ 7. (생략)

④ ~ ⑥ (생략)

■ 전파법 시행령 [별표 13]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제96조제1항 관련)

1. 무선국의 검사수수료
(생략)
2.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
(생략)

비고

별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무선국 중 표
본검사를 받지 않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제
96조 및 제97조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무선국별로 2만원의 준공검사 수수료를 내
야 한다. 다만, 표본검사를 받지 않은 무선
국이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를 적용하여
산정된 검사수수료에서 2만원을 제외한 나
머지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신설>

한 사항

8. ~ 28.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자기적합확인에 관한
사항

4. ~ 7.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 전파법 시행령 [별표 13]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제96조제1항 관련)

1. 무선국의 검사수수료
(현행과 같음)
2.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
(현행과 같음)

비고

1.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무선국 중
표본검사를 받지 않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제96조 및 제97조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
당 무선국별로 2만원의 준공검사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표본검사를 받지 않은 무
선국이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검사를 받
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를 적용하
여 산정된 검사수수료에서 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무선국자기적
합확인서를 제출한 무선국에 대해서는 해

■ 전파법 시행령 [별표 25]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18조제4호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 2. (생략)		(생략)		
3.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의 허가증 또는 법 제22조의 2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 명서에 적혀있는 준공기한(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후 30일이 지난 때까지 준공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2항 제3호	허가 취소 또는 폐지		
4. ~ 6. (생략)				
<신설>				
7. 법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한(검사기관의 사정으로 발생한	법 제72조제2항 제4호의3	허가 취소 또는 폐지		

당 무선국별로 2만9천원의 무선국자기적합확인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전파법 시행령 [별표 25]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18조제4호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 2. (현행과 같음)		(생략)		
3. -----				

4. ~ 6. (현행과 같음)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법 제72조 제2항 제4호의3	허가 취소 또는 폐지		
8. -- 제24조제4항-----	법 제72조제2항 제4호의4	---		
--		---		
-----		---		
-----		---		
-----		---		

■ 전파법 시행령 [별표 28]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 라. (생략)

2. 개별기준

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과태료

■ 전파법 시행령 [별표 28]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 라.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과태료

(단위: 만원, 1국)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방송·전기통신사업법 무선국			그 밖의 무선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단위: 만원, 1국)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방송·전기통신사업법 무선국			그 밖의 무선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연 락 처	(044) 202 - 4953
	(044) 202 - 4957